

사용비용 보조 관련 질의회신 사례(Q&A)

Q1 해산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의미는 무엇인가요?

-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법 제 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여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를 해산추진위원회라고 하며, 그 추진위원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구성된 위원을 의미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5.23.)

Q2 해산일자와 고시일자 중 적용일자는 언제인지와 검증위원회 보조금 결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1 의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2-1-1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 주거사업과 2015.05.13.)

Q3 검증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는 사용비용 보조금 세부사항이 궁금합니다.

- ⇒ 사용비용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의 비용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 법 제16조의2,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조례 제15조의4 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같은 조 제6항의 ”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 “ 까지 사용한 비용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은 2017.7.18.자 각 자치구에 송부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절차 등 안내」 의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조합(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 아울러 해산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는 조례에 의거하여 마련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0호)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절차 등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산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향후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시 재생협력과 2016.07.20.)

Q4

시 도정조례 제15조의4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기한(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을 00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연기요청 할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4항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바 귀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도정조례에 따라 기한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4.06.23.)

Q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바, 판결 확정시까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 가능한지 여부 및 신청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판결 확정시 보조금 신청 가능한가요?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4.06.23)

(시 주거사업과 2015.08.26.)

Q6

시 도정조례 제15조의4제4항에서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보조금 신청기한이 연장이 가능한가요?

⇒ 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제4항 규정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1.09)

Q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의 내용에 의거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의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전인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용한 금액은 제외)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의 내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만으로 국한되나요?

⇒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 적용 대상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1.06.)

Q8

추진위원이 연임을 결정하였으나,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연임 또는 변경된 추진위원의 인정여부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자격상실, 선임·변경, 해임·교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승인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5.23.)

Q9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창립총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연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써 조합창립총회에서의 예산 의결을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 사용비용의 보조대상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취소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써 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운영규정 별표 제21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창립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창립총회의 의결사항을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간주여부는 총회개최 당시 의결내용, 개최 목적·취지, 운영규정 등을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3.10.)

Q10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간 대여금 이자가 사용비용 보조 범위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는 대여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총회의 결 등을 거쳐 조합원이 대여금액, 상환방법(이자포함)등을 인지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사용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검증 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결정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외주용역비 평균금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1.22.)

Q11 외주용역비의 예산인정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비용 보조금의 범위는 ‘외주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 설계) 및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며, 시조례로 정하는 비용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 주거사업과 2015.05.13.)

Q12 주민총회 미개최 연도에 대한 예산 인정 여부와 업체 선정 적법여부, 추진위원회의 용역업체 선정 적법여부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함.
- ⇒ 사용비용 보조 대상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취소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검증기준으로 제시되지 않거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3.10)

Q13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비용 인정여부와 용역계약서상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등의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비용 보조 가능여부 및 계약체결시 용역비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업무 인정비율 조정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5에 따라 자치구에 구성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에서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주민총회 의결서 및 계약서, 용역업무 수행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3.10.29.)

Q14

총회에서 설계업체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로 위임함을 결의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한 경우, 설계업체의 선정 및 계약이 위 규정들에 비추어 사용비용 보조 대상으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사용비용 보조 대상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취소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써 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3.11.)

Q15

해산추진위원회가 최초 사용비용보조금 신청시 신청하지 않았던 외주 용역비(1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이의제기 신청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서 "용역계약체결에 의사결정에 대한 증빙자료는 보완요청사항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만 인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최초 사용비용보조금외에는 이의신청으로 사용비용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00구 건축과 2015.05.28.)

Q16

정비사업전문관리 및 설계 용역비는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3의 보조 범위에 포함되고 있고, 그 밖의 보조 범위에 대해 서울시 도정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 조례에서 보조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 범위 이내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용비용 보조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2-1-1)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회의결 거쳐 선정된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 및 설계사)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업무추진 추진상황 등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4.11.28)

Q17

정비사업전문관리 및 설계자 선정을 추진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주민총회에서 승인 받은 경우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제3항에 의거 총회에서 경쟁입찰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총회의결을 거쳐 결정하였다면 계약서, 업무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4.12.09)

Q18

해산추진위원회가 최초 사용비용보조금 신청 시 신청하지 않았던 외주용역비(1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이의제기 신청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서울시 고시 제2013-305호) 제3장 제1절 3-1-1에는 보조금 신청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해야하며,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는 용역계약체결 의사결정관련 증빙자료는 보완 제출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의사결정관련 증빙자료는 추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구청장은 의사결정

관련 사항 외에 최초 신청된 증빙자료에 대한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신청 대표자에게 증빙자료 보완요청은 가능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6.09)

Q19 최초 보조금 신청 후 검증위원회 검증을 위한 사전검토 중 우리구의 업무실적 증빙자료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된 보완자료가 외주용역비 항목에서 새로운 업체를 추가 및 신청금액 증액되어 제출된 경우 이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서울시 고시 제2013-305호) 제3장 제1절 3-1-1에는 보조금 신청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해야하며,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는 용역계약체결 의사결정관련 증빙자료는 보완 요청사항에서 제외되어 최초 신청시 제출서류만 인정하는 바, 최초 의사결정관련 증빙자료에 없는 새로운 용역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구청장은 의사결정관련 사항 외에 최초 신청된 증빙자료에 대한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신청 대표자에게 증빙자료 보완요청은 가능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6.30.)

Q20 보조금을 해산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이해관계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 가능한가요?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서울시 고시 제2013-305호) 제4항 제2절 4-2-3에는 구청장은 대표자가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필요한 조치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 등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주거재생과 2015.05.18)

Q21 가 가가 , ?
가 가가 ()
) , ' 16 2
6 , ' 가
27 3 2 15 4
가 ' 가
16 2 6